수술 당일 산정된 수술후 처치료 인정여부

Q. 아래다리 열상으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에게 창상봉합술과 단순처치를 시행하여 청구하였으나 단순처치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. 사유가 무엇인가요?

단순처치는 「자2-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 처치 등」으로 분류되는 수가로 동 수가의 '주1'에 의거 수술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창상봉합술 실시 당일에 실시된 단순처치는 산정할 수 없으며 수술 익일부터 산정 가능합니다.

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

자-2-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[1일당]

주: 1. 수술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.